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투자신탁 [주식]

□ 변경 사유 : ①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
(3등급(다소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)
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⑤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20. 8. 5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-	투자위험등급 변경	<u>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	<u>2 등급(높은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투자위험등급 변경	<u>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	<u>2 등급(높은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 으로 기재	-	<u>2020.7.24. 기준</u> <u>2020.5.31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7. 24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1. 30. 기준</u>	<u>2020. 6. 30. 기준</u>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오기 정정 및 미기재 클래스 추가 기재	-	<u>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만 기재/1, W 클래스 추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1. 30. 기준</u>	<u>2020. 6. 30. 기준</u>


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1. 30. 기준	2020. 6. 30. 기준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오기 정정 및 미기재 클래스 추가 기재	-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동 펀드 해당 클래스 내용 만 기재/I, W 클래스 추가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 대상 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(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 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	1) 지분증권(주식 등)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 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(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 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 밸류웨이 증 권모투자신탁[주식]	기재 오기 정정	5) 집합투자증권투자 : 라)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5%를 초과하여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 자할 수 있음	5) 집합투자증권투자 : 라)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20%를 초과하여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하는 행위.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 자할 수 있음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 합한 투자자 유형	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 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 경	표준편차 : 11.17% 투자위험등급 : 3 등급(다 소 높은 위험)	표준편차 : 19.67% 투자위험등급 : 2 등급(높 은 위험)
	위험등급 변경 내역	-	2020.8.5. : 3 등급 → 2 등급 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 익률 변동성이 15%초과 ~25%이하 구간에 해당되 어 3 등급에서 2 등급으로 변경
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 <p>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</p>	<p>-</p>	<p><u>2020. 7. 24. 기준</u></p> <p><u>2020.5.31. 기준</u></p>
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	<p>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납입요건</p> <p>가입기간 5년 이상, <u>연 1,800 만원 한도</u>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공제제도</p> <p>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/p> <p>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/p> <p>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</p>	<p>납입요건</p> <p>가입기간 5년 이상, <u>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u></p> <p>가. <u>연 1,800 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</p> <p>나. <u>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</u></p> <p>공제제도</p> <p><u>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조</u></p>



		<p>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p> <p>※ 지방소득세 별도</p>	
--	--	---	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7. 24.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7. 24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 7. 24. 기준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9. 11. 30. 기준</u>	<u>2020. 6. 30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나. 주요 업무 (3) 업무위탁 ② 수익자 명부 작성 업무의 위탁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1 기(2018.12.31)</u> <u>제 20 기(2017.12.31)</u>	<u>제 22 기(2019.12.31)</u> <u>제 21 기(2018.12.31)</u>



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19. 11. 30. 기준	2020. 6. 30. 기준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	주소 업데이트	-	업데이트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	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에</u>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 다. 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에</u>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 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		<p>변경 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/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 / 집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p> <p>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<p>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</p>
--	--	---	--

			<p><u>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함</u></p> <p><u>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</u></p> <p><u>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</u></p> <p><u>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</p>	<p>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</p>	<p>예탁결제원</p> <p>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</p>	<p><u>전자등록기관</u></p> <p>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</u></p>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결제원	전자등록기관
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

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	300만원 (700만원)	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